

| |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
| 의안번호 | 제 470호 |
| 의 결 연 월 일 | 2013년 월 일 (제 319 회) |

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| | |
|-------|-------------|
| 제 출 자 | 충 청 북 도 지 사 |
| 제출연월일 | 2013년 4월 5일 |

법무통계담당관 심사를 마칩

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| | |
|----------|-----|
| 의안 번호 | 470 |
|----------|-----|

제출연월일 : 2013년 4월 5일

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사유

-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을 위하여 하이브리드자동차 구입·등록 시 지역개발채권 감면(150만원 한도) 만료기간을 연장하여 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공채 매입 면제 대상(안 제8조의 별표 2)
 - 하이브리드자동차 등록 시 지역개발채권 매입 감면기간 연장 ('12. 12. 31 → '14. 12. 31)
 - 하이브리드자동차를 등록하는 경우 2014년 12월 31일까지 150만원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채권 매입의무 면제
- 시행전('13. 1. 1 이후) 등록된 하이브리드자동차도 적용(부칙 안 제2조)

3. 의안전문 : 붙임

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해당없음

5. 관계법령 발췌 : 붙임

6. 비용추계서 : 해당없음

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2 제2호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타.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를 등록하는 자가 2014년 12월 31일까지 150만원(지역개발채권의 매입 금액이 1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지역개발채권의 매입 금액 전액을 말한다)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해야 하는 경우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하이브리드자동차 등록 시 공채매입 면제에 관한 적용례) 별표 2 제2호 타목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이 조례 시행 전에 등록된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하여도 적용한다.

관계법령 발췌

□ 지방공기업법

제19조(지방채 등) ① ~ ② <생략>

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조례로 정하는 자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.

1.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·허가·인가를 받는 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을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자
2.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·출연(出捐)한 법인과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
3.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·출연한 법인과 용역 계약 또는 물품 구매·수리·제조 계약을 체결하는 자

④ 지역개발채권의 매입 절차, 매입 대상별 금액, 채권등록 방법, 이율 및 상환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·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정한다.

□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<생략>
2. "환경친화적 자동차"란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, 태양광자동차, 하이브리드자동차, 연료전지자동차, 천연가스자동차 또는 클린디젤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 중 지식경제부 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자동차를 말한다.
 - 가. 에너지소비효율이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
 - 나. 「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6호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공해자동차의 기준에 적합할 것
 - 다. 자동차의 성능 등 기술적 세부 사항에 대하여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
3. ~ 4. <생략>
5. "하이브리드자동차"란 휘발유·경유·액화석유가스·천연가스 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연료와 전기에너지(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포함한다)를 조합하여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.